



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

채원영 연구원

-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고,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였음.
-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중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되어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되고 보험료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.
 - 자동차보험 중 「자기신체사고」와 「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」, 「자기차량손해」에 대해서는 면책사유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서 정함.
 - 보험회사는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만을 약관에 제시하도록 하여 다양한 상품이 출시 될 것으로 예상됨.
 - 소비자는 필요한 위험만을 계약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다만, 자동차보험 중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인 「대인배상 I」과 「대인배상 II」, 「대물배상」은 현행과 같이 주요 내용을 표준약관에서 규정함.
- 또한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보장기능 강화,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,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, 보험약관 이해도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 - 「피보험자 개별적용」이 확대되어 배상책임담보의 면책사유 등을 피보험자별로 판단할 수 있어 현재 보다 보상범위가 확대됨.
 - 통신판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교부·설명방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보험회사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약서 부분을 교부하여야 하고, 청약서에 자필서명 누락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됨.
 -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.
 - 또한, 보상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기망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 -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를 순화하고 약관의 체계를 이용하기 쉽게 개편함.

(「자동차보험 표준약관」을 확 뜯어 고칩니다, 금융감독원, 11/6)